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1146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2. 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E생)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48681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2.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2503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 15. 'C은 원고에게 984,753,341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11. 7.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8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4. 11. 2.부터 2016. 11. 1.까지로 된 2014. 11.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C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9. 12. 9.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20. 3. 16. D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48681호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1의 가항 기재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1,832,052,572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합계 87,933,319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금 합계 3,556,282,693원 상당의 가압류 채무, 조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이 약 3,500,000,000원에 이르러 적극재산 합계액 약 1,900,000,000원을 현저히 넘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이른 것은 C이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C에게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별지